

59,021



영어조합법인 업무편람

농림수산식품자료실

등록번호: 15391

등록일: 88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이

차 례

영어조합법인 일반현황

1. 제도도입 배경 및 설립근거	5
2. 법적 성격	5
3. 조합원 자격, 설립등기	5
4. 주요 사업내용	6
5. 출자범위 및 규모 등	6
6. 준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출자	7
7. 세제지원 및 특성	7
8.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비교표	9

영어조합법인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13
2. 창립총회	14
3. 출자	15
4. 설립등기	16
5. 설립통지	17
6. 현물출자(어장) 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17
7. 사업실적보고	18

영어조합법인 정부지원 및 주요 세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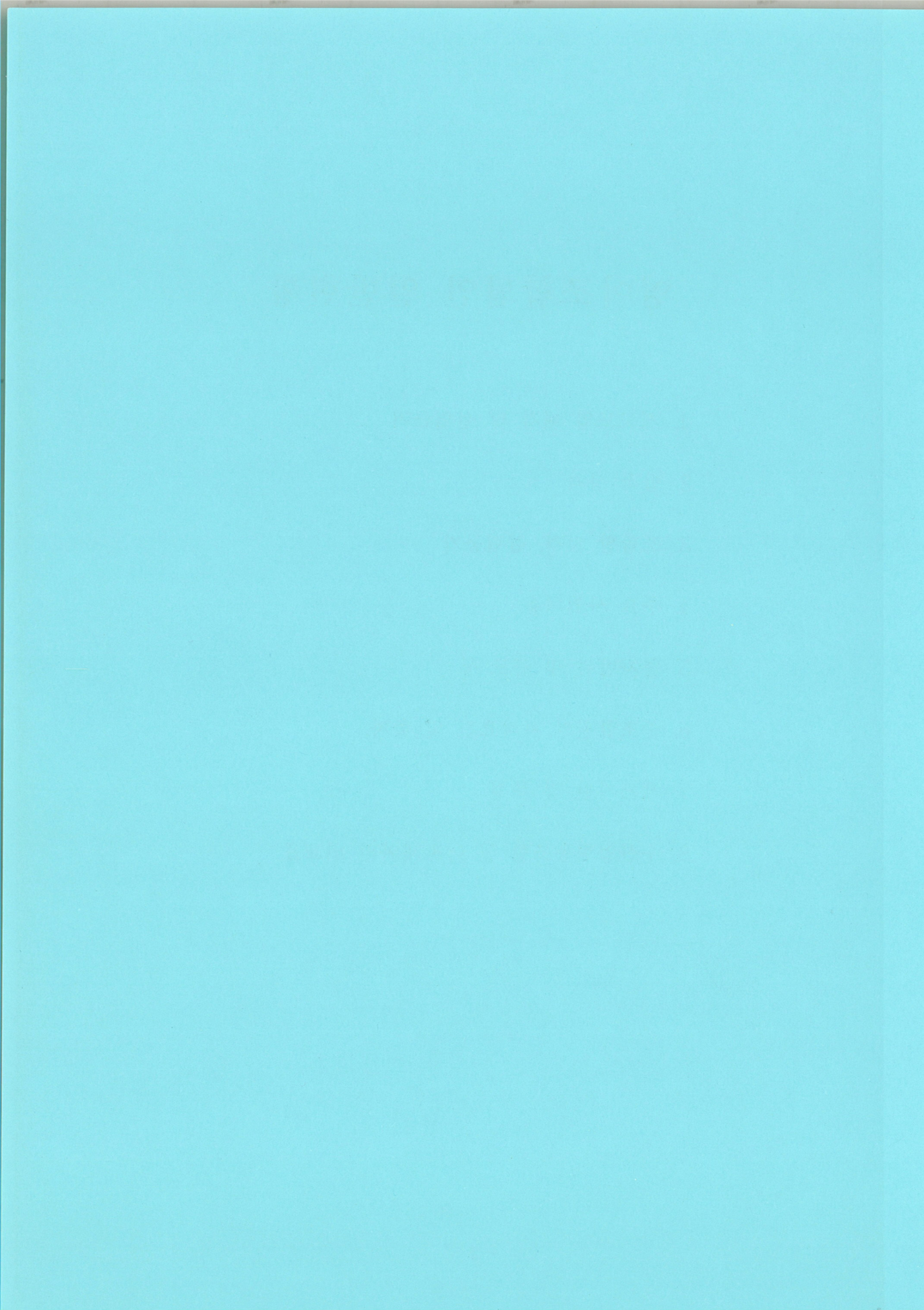
1. 정부지원 대상사업	23
2.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현황	23
3. 과세대상현황	24
4. 조세의무현황	25
5. 사업개시시 주요 의무사항	25
6. 사업결산시 주요 의무사항	29

참고자료

1. 영어조합법인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및 규칙(발췌)	35
2.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48
3. 해양수산업실시규정	63
4. 창립총회의사록 작성(예)	116
5. 등기신청서 작성(예)	118
6.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예)	121
7. 영어조합법인 관련 세금의 종류	122
8. 영어조합법인 관련 세금 감면내용	125
9. 영어조합법인에 전액 과세내용	127
10. 영어조합법인 설립시 세무신고사항	129
11. 영어조합법인 관련 일반법령(발췌)	131
12. 영어조합법인 관련 조세법령(발췌)	138

영어조합법인 일반현황

1. 제도도입 배경 및 설립근거
2. 법적 성격
3. 조합원 자격, 설립등기
4. 주요 사업내용
5. 출자범위 및 규모 등
6. 준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출자
7. 세제지원 및 특성
8.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비교표



1. 제도도입 배경 및 설립근거

- WTO-DDA(도하개발 아젠다) 출범과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의한 EEZ선포로 동북아 신어업질서 형성 등 어업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별어업인의 한계를 보완·극복하고 자본·기술의 결합으로 어업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예어업생산자단체 육성 필요성 대두
- 설립근거 : 수산업법 제9조의2(영어조합법인의 육성)
 - 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립 가능

2. 영어조합법인 법적성격

- 수산업법 제9조의2제2항에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법 제11조의10 규정에 “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음
- 실제로, 수산업법상 영어조합법인은 설립행위 및 권리능력 등에서는 민법상 법인규정과 유사하며, 그 구성원의 성격, 자산의 출자 및 소유형태 등에 있어서는 조합규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성격은 영어조합법인의 도입취지가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어조합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소규모어가를 조합화 하여 자본·기술 집약적인 협업적 어업의 실현으로 어가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

3. 조합원 자격, 설립등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어업인으로서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어업인 5인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45호(1997.5.12) 영어조합법인정관(예) 참조
- 정관작성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증인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조합법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됨

4. 주요 사업내용

- 개별 소규모 어가를 조합화하여 법인이름으로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판매 및 수출하며 자본·기술 집약적인 어업의 실현으로 상품의 고품질, 균질화를 기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 어촌관광 및 수산물의 유통체제개선과 연계하여 국내수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어가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
-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수산물의 생산을 비롯한 저장·가공·유통·판매 등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수산기업적 복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참여어가의 어업노동력 분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도 높일 수 있음
- 또한, 영어조합법인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생산활동은 물론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의 사업과
- 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 등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영어조합법인 우선지원사업 분야(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참조)

5. 출자범위 및 규모 등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현금,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차량 및 부동산 등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나

- 영어조합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조합원은 반드시 자본을 출자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 기타의 현물 출자시에는 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30일 이내에 조합법인 설립사실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함

6. 준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출자

- 준조합원 제도는 수산업에 관심있는 도시자본 유입을 위한 것으로 영어조합 법인에 가입할 수 있는 준조합원의 자격은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 및 가공·유통업자
- 준조합원의 출자한도는 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가 조합법인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준조합원은 조합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의결권과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음
- 준조합원은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조합법인의 발전, 총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가 있음

7. 세제지원 및 특성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감면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감면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정책지원

- 해양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한 각종 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우선지원대상사업 참조

○ 어촌계, 수협 및 영어조합법인은 다수 어업인의 조직체인 점에서 유사하나 성격, 목적, 자격, 업무범위 등에서 상이함

○ 어촌계·지구별수협의 한계 및 취약성 보완

- 어촌계는 마을공동어장이라는 지역성, 다수인(10인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집 및 집행상의 문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연계성 등에서 한계가 있으나, 영어조합법인은 정예화된 어업인단체로 이와 같은 문제점 극복 가능
- 지구별수협은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사업의 집중적 수행이 곤란하나, 영어조합법인은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판매 및 수출 등의 전문적·기술집약적인 협업적 어업의 실현으로 상품의 고품질·균질화를 기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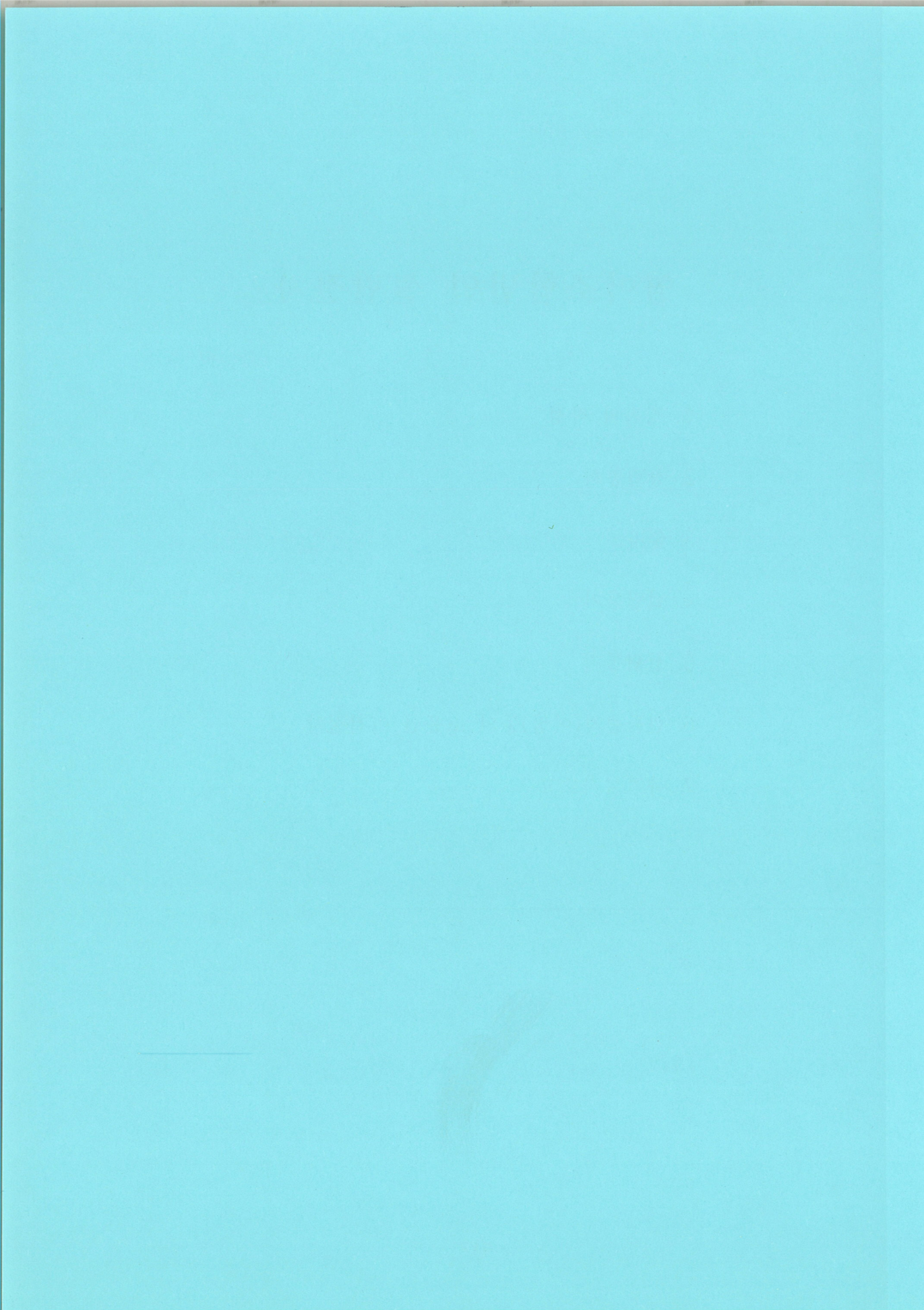
8.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비교표

구분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성격	○협업적 어업경영	○어업인, 수산제조업자의 협동 조직	○일정구역내 어촌계원의 공동사업수행
목적	○어업규모가 작은 어업인 끼리 어장, 수산시설 등의 자산을 공동출자하여 협업적 어업경영,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영어의 능률화와 소득증대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 생산력의 증강 도모	○어촌계 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도모
구성원 자격	○일반 조합법인 - 어업인 ○협동양식어업 조합법인 -어촌계 계원 또는 수협 조합원	○지구별 수협 -지역내 거주하는 어업인 ○업종별 수협 -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제조별 수협 -특정수산제조업 경영자	○어촌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업무구역	○제한없음	○지구별 수협 - 시·군 ○업종별 수협 - 도 또는 전국 ○제조별 수협 - 도 또는 전국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정관에서 정함 (통상 마을 단위)
설립절차	○5인이상의 어업인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정부의 인·허가 없음	○조합원 자격자 20인이상 발기 및 당해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 과반수(최소한 200인이상) 동의로 설립 →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원 10인이상 발기 및 정관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의결기관 및 임원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장 및 상임이사 ○감사	○총회 -계원으로 구성

구 분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대 상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의 경영과 그부대사업 ○어업에 관련된 공동시설 설치 또는 운영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 보관, 판매 및 검사사업 ○신용사업, 이용·제조가공사업 ○공제, 후생복지사업 ○차관사업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쟁 ○소속 지구별조합에 속하는 어업권의 행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등 	
상 호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수협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별조합은 어장의 관리 등 계의 구역내의 업무를 지도감독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계를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수협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정 부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사업의 우선지원 ○수산업법상 우선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사업의 우선지원 ○마을어업등 수산업법상 우선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사업의 우선지원 ○마을어업등 수산업법상 우선면허 	
세 제 원	국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출자조합원 양도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과금면제(수협법 제9조) - 세금과 부과금 면제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면제 ○ 사업소세 50%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감면 ○사업소세의 50% 경감

영어조합법인 설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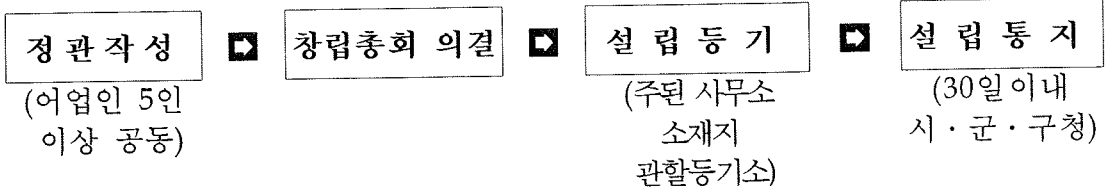
1. 정관의 작성
2. 창립총회
3. 출자
4. 설립등기
5. 설립통지
6. 현물출자(어장)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7. 사업실적보고



영어조합법인 설립절차

- 영어조합법인은 수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
-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발생

< 설립 절차 개요 >



1. 정관의 작성 (수산업법 제9조의2제6항)

□ 정관 정의

- 영어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받기인 5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전원 합의작성)

□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45호, 1997.5.12)

- 영어조합법인 설립시 정관작성 준거로 이용
- 정관(예)의 기재내용
 - 절대적 기재사항 : 준수규정 및 내용변경 가능 규정
 - 임의적 기재사항 : 조합원 합의에 따라 규정

□ 정관은 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의 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8)

① 명칭

(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반드시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동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수산업법 제9조의2 제5항)

- ② 목적
- ③ 사업
- ④ 사무소의 소재지
- 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⑥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⑦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⑪ 회계년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⑬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상기이외의 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음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함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조합원의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영어조합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조합원 명부의 작성 : 설립당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2. 창립총회 (수산업법 제9조의2제7항)

정관,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① 정관의 승인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 구성)

[임원(이사)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④ 설립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창립총회의 의결은 영어조합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 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함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시에 첨부
(공증인법 제66조의2)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예) : 참고자료 4 참조

3. 출자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6)

영어조합법인에의 출자는 어장·현금이나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차량 및 부동산 등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준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출자 총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협동양식어업 경영의 경우 준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는 총출자액의 1/2까지 가능

출자의 불입

○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토지 또는 어장과 같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

출자증서의 발행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함)등을 기재
- 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조합원 1인의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함

4. 설립등기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3)

- 등기신청인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대표이사)
- 등기신청서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다음의 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 등기사항
 - ① 명칭
 - ② 목적
 - ③ 사업
 - ④ 사무소의 소재지
 -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⑦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 ⑧ 복수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예) : 참고자료 5 참조
 - ①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② 정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③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 ④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등기소 : 영어조합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 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

5. 설립통지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 영어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 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부, 출자자산내역

-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기재한 영어조합법인 현황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 해당 수협 및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에 설립사실을 통지하여
 - 영어조합법인을 육성·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

6. 현물출자(어장)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6)

조합법인에의 출자(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6)

- 조합원은 어장·어선 또는 기타의 현물(부동산, 차량 등)로 출자 가능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협동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1/2을 초과할 수 없음

- 조합법인이 설립중일 경우에는 창립총회후 설립등기전 출자 -

① 출자재산의 평가

조합법인은 출자재산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② 현물출자계약

- 계약당사자 : 조합법인(대표이사)과 출자조합원
-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예) : 참고자료 6 참조

③ 계약설립후

- 출자증서의 발행(조합법인)
 - 조합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는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을 기재
 - ※ 기재요령
 - 어장(양식장) : 어장(양식장)의 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기재
 - 어 선 :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년도, 총톤수, 어업의 종류(허가번호)를 기재
 - 부 동 산 : 지번, 지목, 면적, 건물구조 등을 기재
- 출자재산의 양도(출자조합원)
 - 출자목적인 재산을 조합법인에 양도하고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증서를 교부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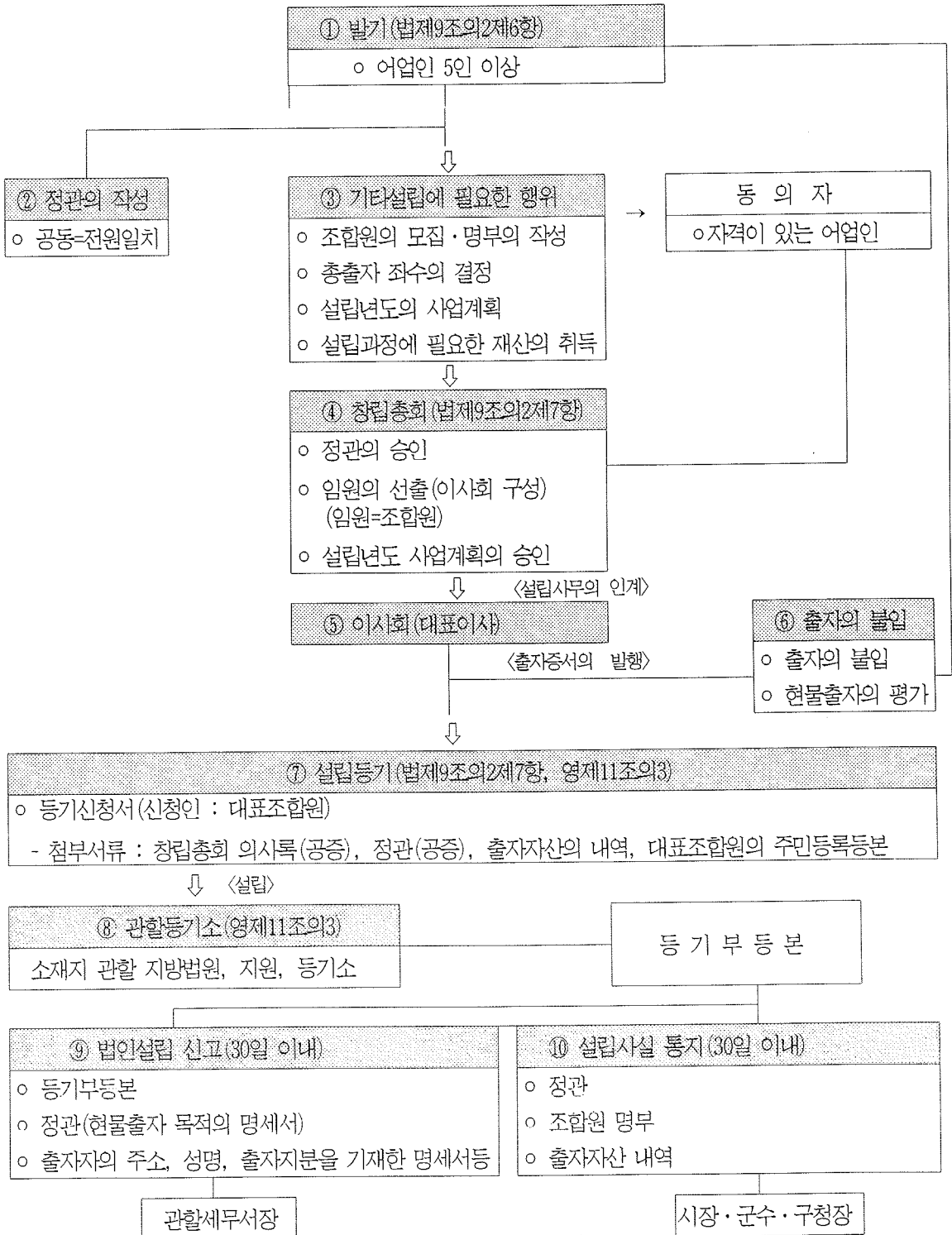
□ 출자재산의 소유권이전(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법인설립등기 완료후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 조합법인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 신청서(법무사와 상의 작성)
 - 현물출자계약서
 - 등기권리증
 - 출자조합원(양도자)의 인감증명서(소유권이전용) 및 주민등록등본
 - 조합법인(양수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락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7. 사업실적보고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제5조)

- 영어조합법인은 매년말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3. 10)
- 시·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3. 31)

영어조합법인 설립절차



영어조합법인 정부지원 및 주요세부사항

1. 정부지원 대상사업
2.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현황
3. 과세대상현황
4. 조세의무현황
5. 사업개시시 주요 의무사항
6. 사업결산시 주요 의무사항

1. 정부지원 대상사업

- 수산업법상 지원 대상면허 등 : 협동양식어업 면허, 일반양식어업 면허 등
 -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상 지원 대상사업
 - 해면양식어업, 양식단지조성사업, 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수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물직거래시설 및 운영자금, 수산물표준 물류화사업, 전통식품 개발, 수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지도,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 내수면어업 개발
 - 기타 읍자 및 지원
 - 영어조합법인이 생산분야 사업경영시 100% 영어자금읍자 가능
-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4조
- 목적 : 정부지원 의존적인 법인 난립을 막고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영어조합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 :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제4조(보조금을 교부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 주요내용 : 영어조합법인이 정부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총출자액, 사업능력, 사업운영실적 등을 규정함

2. 국세·지방세 감면현황

- 국세감면(2000.10.2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 부가가치세 면제 및 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 법인세 : 일정범위 소득 법인세 면제
 - 소득세 : 배당소득 중 일부 소득세 면제. 그 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5/100로 감면하고, 주민세를 미부과하며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인지세 : 업무용 작성 증서 및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지방세 감면(2000.12.29 지방세법개정, 2001.1.1. 시행)
 -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50/100 경감
 -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 면제

3. 과세대상현황

○ 조세의 의미

조세란 각 나라의 조세제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조세는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고자 개별적 보상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법에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킨 국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금전급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국민경제가 생산한 부의 일부가 국가 또는 공법상의 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수단이며,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기본적 목적외에도 오늘날에는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및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영어조합법인과 조세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영어조합법인도 사업을 함에 있어 조세문제와 많은 접촉을 하게 됨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세법지식의 필요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조세권 행사를 통해 국민 각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당해 조세권의 행사내용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납부 의무자인 영어조합법인도 조세의 종류,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의 내용, 국가정책상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금은 무엇인지 사전에 알아 두어야 한다.

○ 세금의 분류 및 과세대상

조세분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조세징수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

☞ 영어조합법인 관련 세무사항 : 참고자료 7 내지 10 참조

4. 조세의무

조세의무는 납세의무와 협력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납세의무는 세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업년도 소득분 법인세의 납부,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의무를 말한다.
- 협력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를 대리하여 징수·납부하거나, 당해 세금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세행정 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말한다.
- 따라서 협력할 의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세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
 - 세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지급한 자가 그 지급내역을 법정서식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조서 제출의무
 - 세법상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한 거래내용을 법정서식에 의해 쌍방이 세무서에 알려야 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자가 비거주자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등이 있음.

5. 사업개시시 주요 의무사항(원천징수 포함)

사업년도 신고

- 법령, 정관, 규칙 등에서 회계년도를 사업년도로 봄으로 별도 신고는 불필요함(법인세법 제6조제5항)

○ 단, 사업년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재고재산평가방법 및 감가상각방법 신고

○ 재고재산평가방법 신고

-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감가상각방법 신고

- 신설법인의 경우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기존법인이 고정자산 신규취득시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

○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 제109조)

① 조합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1부

② 재산목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정관사본 1부

⑤ 출자자(조합원)명부 1부

⑥ 현물출자시 출자명세서 1부

⑦ 임원명부 1부

⑧ 출자조합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⑨ 대표이사과 조합원 호적등본 1부

⑩ 출자조합원의 출자확인서(자필서명날인) 1부

※용도난에 “출자확인용”이라 명시된 인감증명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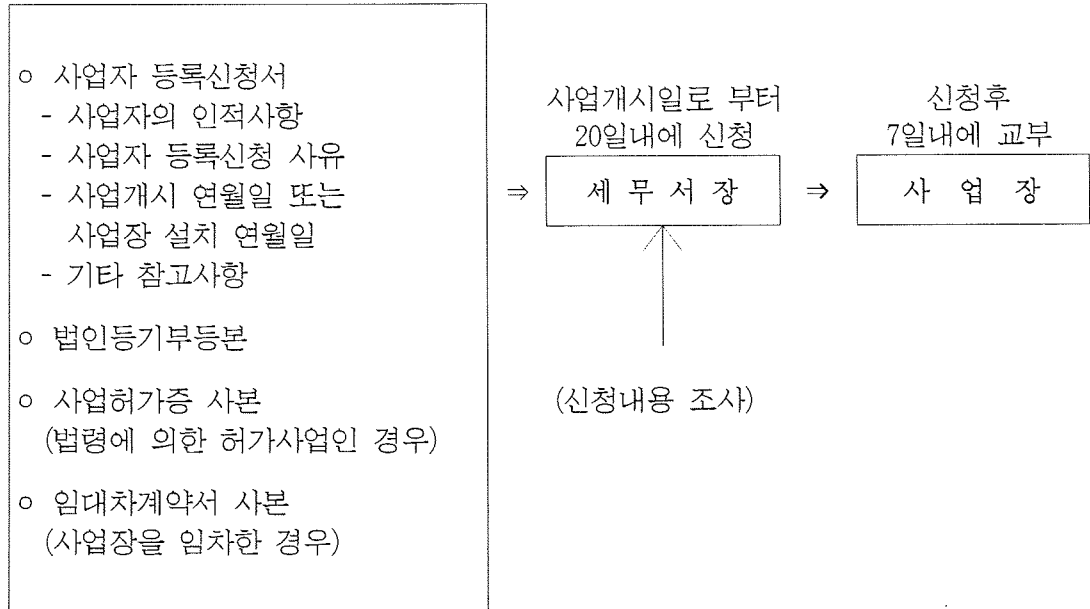
⑪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등기소 발행) 1부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신청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가능함

(법인세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4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교부절차



□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 어업경영 및 어업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3항)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 무가 면제되나,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 계산서 제출기한 : 1.1.~12.31.사이 거래된 계산서를 다음년도 1.31.까지 제출
<세금계산서 제출기한>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거래시기 또는 수입시기별	제 출 기 한	비 고
제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1월~3월 4월~6월	4월25일내 7월25일내	1. 1. ~3. 31. 까지 거래분중 미제출 분 포함
제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7월~9월 10월~12월	10월25일내 익년1월25일내	7. 1. ~9. 30. 까지 거래분중 미제출 분 포함

- 사업자(영어조합법인)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만일, 예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 의무

○ 원천징수해야 할 대상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73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 범위안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자유직업소득

- 근로소득 (영어조합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 퇴직소득 (영어조합법인의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 기타소득

○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법인세법 제73조)

※ 다만,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조합원당 1천200만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5/100로 하며,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고, 동 소득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봄(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지급조서 제출 의무(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조서 제출대상

- 개인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반드시 지급조서 제출

- 개인자영사업자(자유직업자 포함) 지급소득, 갑종근로소득, 갑종퇴직소득,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다만, 근로소득은 근로제공년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

- 지급조서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의 기한내까지 제출 가능

(이 경우 지급조서 지연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됨)

- ①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30일
- ②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31일
- ③ 9월분과 10월분은 12월31일
- ④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년도 2월말일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등의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10/100
- 지급조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2/100
- 지급조서 지연제출 가산세 : 지연제출한 지급조서 지급금액의 2/1,000

장부의 비치 기장

-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12조)
-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시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6. 사업결산시 주요 의무사항

결산의 확정 (상법 제447조 내지 제449조)

-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가 종료하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여야 함
- 결산확정이란 정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함
- 만일 당해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아 신고기한을 기산하게 됨

대차대조표의 공고 (법인세법 제114조)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하는 대차대조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무(無)공고(신고기한 경과후 공고,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

이나 금액을 틀리게 공고한 경우 포함)시에는 법인세 산출내역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금액의 2/10,00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을 가
 산세로 징수함

□ 과세표준과 부담세액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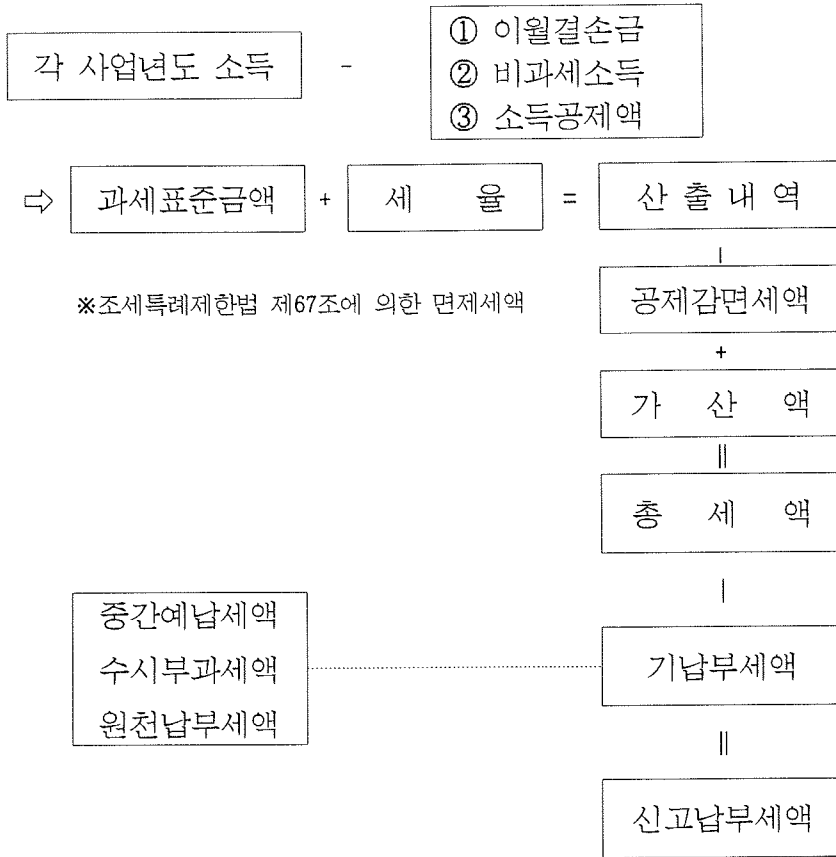
○ 기업이익의 계산

$$\boxed{\text{수익}} - \boxed{\text{비용}} \rightarrow \text{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의 계산}$$

○ 각 사업년도 소득(과세소득)의 계산

$$\begin{aligned} & \boxed{\text{익금}} - \boxed{\text{손금}} \\ = & \boxed{\text{당기순이익}} + \boxed{\text{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boxed{\text{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qquad \qquad \qquad \text{「세무조정」} \\ = & \boxed{\text{각 사업년도 소득}} \end{aligned}$$

○ 과세표준금액 및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절차



□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로부터 15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소관세무서, 한국은행(한국은행의 국고수납대리점 - 일반시 중은행의 본·지점, 농·수협)의 본·지점 포함),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법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	
결산확정기한	신 고 기 한	결산확정기한	신 고 기 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법인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된 법인
-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법인

-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상 준비금이 사업년도말 현재 2억원 이상인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에서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
- ④ 기타 부속서류

- 세액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개정시행령 제64제1항)

※ 상기 ①~③의 서식중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함

참 고 자 료

1. 영어조합법인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및 규칙(발췌)
2. 영어조합법인 정관 (예)
3. 해양수산사업실시요령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4호)
4. 창립총회의사록 작성(예)
5. 등기신청서 작성(예)
6.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예)
7. 영어조합법인 관련 세금의 종류
8. 영어조합법인 관련 세금 감면내용
9. 영어조합법인에 전액 과세내용
10. 영어조합법인 설립시 세무신고사항
11. 영어조합법인 관련 일반법령(발췌)
12. 영어조합법인 관련 조세법령(발췌)

1. 영어조합법인 관련 수산업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발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p>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한하여 면허한다.</p> <p>②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p> <p>③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 양식어업은 당해 수면에 인접한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p> <p>1.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있는 경우 2.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수면으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이하 “대단위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제2항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p>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p>		
<p>제9조의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 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 9. 30)</p>	<p>제11조(협동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자격등) ① 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의 어촌계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p>②<삭제 '99. 9. 30></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p>④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p> <p>⑤ 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⑥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p> <p>⑦ 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p> <p>⑧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 (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 및 유통·가공업자 <p>제11조의3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이를 신청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8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8호·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주소 및 성명 3. 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p>③제1항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p>④조합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조합법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조합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법인의 업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수 있다.</p>	<p>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①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수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조합원명부 1부 4.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출자자산내역서 1부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p>제11조의4 (이전 및 변경등기 등) ① 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재지에 있어서는 주소재지와 이전한 연·월·일을, 주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1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p> <p>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주소재지와 이전한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③제11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④사무소의 이전 및 변경 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조(보조금교부대상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7조 및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p> <p>제4조(보조금을 교부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사업능력·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p>제11조의6 (조합법인에의 출자) ①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장·현금이나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협동양식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1조의7 (조합법인의 사업) ①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 2. 어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p>제5조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법인의 연간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광역시장·도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p>제11조의8 (정관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p>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영어규칙
<p>제9조의3(다른 법률의 준용) ①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원에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202조를 각각 준용한다.</p> <p>제33조(임대차의 금지등)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나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p>	<p>제11조의9(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조합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조합법인의 파산한 경우 4.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미만이 된 후 1년이내에 5인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조합법인을 제외한다)(개정 '99. 9. 30)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p>제7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청구 2.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 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그 등록의 취소 4. 법 제9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p>②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2. 법 제9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도 말까지의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1. 9. 29]</p>	

[별지 제1호서식]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및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①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대표이사)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 주 소		
⑦사 업 구 역		⑨ 조 합 원 수 (준조합원수)	명 (명)
⑧설 립 일 자			
⑩사 업(종류)			
⑪총출자계좌수		계좌 (천원)	⑫ 준조합원 출자계좌수 (천원)
년 월 일 명 칭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조합원명부 1부 4.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출자자산내역서 1부		

482711-33111일
1997. 6. 27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								
①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③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대표자 (대표이사)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⑦ 사 업 구 역								
⑧ 설 립 일 자		⑨ 조 합 원 수 (준조합원수)			명 (명)			
⑩사업(종류)								
출 자 자 산 의 내 역	⑪총출자계좌		좌(천원)		⑫ 준 조 합 원 출자계좌수 (계좌 천원)			
	⑬ 어 장	종 류	내 역	평가액	⑮ 부 동 산	종 류	내 역	평가액
		계		천원		계		천원
	⑭ 어 선	종 류	수 량	평가액	⑯ 기 타 현 물	종 류	내 역	평가액
						계		천원
		계		천원	⑰ 현 금		천원	
					⑱합계(평가액 + 현금)		천원	
	⑲ 경영형태							
⑳조합원수 변경현황	연 도	년	년	년	년	년		
	조합원수 (준조합원수)	(명)	(명)	(명)	(명)	(명)		

48277-33211일

210mm × 297mm

1997. 6. 27 승인

(보존용지(1종)120g/㎡)

(뒷쪽)

㉑ 대표자(대표이사) 선임 변경 기재란					
일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㉒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재란					
일 자	소 재 지	일 자	소 재 지		
㉓ 출자계좌수 변경 현황					
일 자	증 좌	감 좌	총출자계좌수	변 경 내 역	
㉔ 연도별 결산 현황					
연 도					
결산실시여부					
배 당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결산 수지	조수익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순수익	천원	천원	천원	천원
㉕ 사무실 운영 현황					
사무실 별도 확보여부		확보 (m ²), 미확보			
상근직원의 채용여부		채용 (명), 미채용			
회계 처리방식의 종류		단식부기 · 복식부기			

[별지 제3호서식]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

(년도)

1. 영어조합법인현황

명칭		전화번호	() -
대표자 (대표이사)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일자	.

2. 사업실적내용

구분		전년도 (년)	당해년도 (년)	증감
조합원수 (준조합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출자액 (계좌수)		천원 (계좌)	천원 (계좌)	천원 (계좌)
사업 (종류)				
생산	수량	천톤	천톤	천톤
	금액	천원	천원	천원
경영 실적	총수입	천원	천원	천원
	총지출	천원	천원	천원
	손익	천원	천원	천원
보조액	국고	천원	천원	천원
	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합계 (보조액누계)	(천원)	(천원)	(천원)
융자액	융자금액	천원	천원	천원
	상환잔액	천원	천원	천원
부채액		천원	천원	천원

48277-33511일

1997. 6. 27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 신 기 관 명)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전송번호)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인

참 조 :

제 목 : (년도)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영어조합 법인의 사업실적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단위:개소, 명, 천톤, 천원)

구 분		합 계	포획·채취	양 식	수산물가공	수산물유통	기 타
법 인 수	계						
	신규법인						
	기존법인						
조 합 원 수 (명)	계						
	(준조합원)						
	신규법인 (준조합원)						
	기존법인 (준조합원)						
생 산	수 량(천원)						
	금 액(천원)						
경영 수지	흑자법인						
	적자법인						
보조액 (천원)	당해년도						
	보조누계						
융자금 (천원)	당해년도						
	융자금액						
부 채 액(천원)							

※ 양식은 종묘의 생산 및 중간육성을 포함한다.

48277-33611보

1997. 6. 27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2.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45호, 1997.5.1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 고)

명칭중에는 반드시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 고)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수산업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에 둔다.

(비 고)

별도의 (분)사무소를 두는 조합법인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을 『본 조합법인의 주된(주)사무소는』으로 고치고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어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4. 어업작업의 대행
5.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비 고)

1. 각 사업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어업의 경영 : 조합법인이 직접 수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과정을 포함함.
 - 나.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조합법인의 어업경영에 부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외의 자의 어업에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다.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합법인이 공동경영을 위하여 어선, 창고, 양식장, 냉동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라.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 조합법인이 어선, 어업기계, 어구, 건조시설 등을 보유하여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마. 어업작업의 대행 : 조합법인이 조합원 이외의 자로부터 어업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바.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 조합법인의 조합원(혹은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함.
2.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사업이외의 사업도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을 적절히 열거할 수 있다.

예) 6. 낚시유어사업

제5조(공고방법) ①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7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연간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만 〇〇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출자할 수 있는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현금 기타의 현물을 소유한 자
(비 고)
 1. 제1호의 경우는 조합법인의 실정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2. 제2호의 〇〇은 20세이상으로 하되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제3호의 경우 조합법인이 출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만을 기재한다.

제8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 또는 가공하는 자
(비 고)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및 제2호 중에서 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제9조(가입) ①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경영규모(어장면적, 어선 등) 및 연중 어업종사일수

②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 허용 여부를 이 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 기입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①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제1항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비 고)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의 비율에 따라 가지도록 정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⑤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11조(의무) ①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 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4호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의무사항을 적절히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탈퇴) ①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을 당해 회계년도 말에 한다.

②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제7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8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조합원의 경우는 총회의 결의, 준조합원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3조(제명)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비 고)

제명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제4호부터 추가하여 열거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및 시분

제14조(출자) ①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현금이나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기타 현물(부동산, 차량 등)로 할 수 있다.

②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등 현물(이하 "현물출자물"이라 한다)의 출자

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합법인 총출자좌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현물출자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현물출자물 및 그 평가액과 현물출자물에 의한 출자좌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⑥ 현물출자물은 이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⑦ 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좌수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총출자좌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협동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비 고)

제1항, 제4항중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합법인 총출자좌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과 제7항은 반드시 이 정관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즉시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어장(양식장)의 경우에는 어장(양식장)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말하며,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년도, 총톤수, 어업종류(허가번호)를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고)

출자증서의 발행은 출자지분에 대한 세금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출자재산의 표시, 특히 토지의 경우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 출자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소액 출자자에게 증좌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년도 말에 증좌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비 고)

법정적립금으로 출자총액의 2배를 적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를 『출자총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로 수정한다.

제18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년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비 고)

○○은 10이상 50이내에서 정한다.

제19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얻어지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이
2. 합병에 의한 차이
3. 인수재산 차이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이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0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1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고)

제2호의 사업준비금 배분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2조(지분의 상속) ①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조합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24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 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5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①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할 수 있다.

②환불할 재산 가운데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탈퇴 조합원이 출자한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등이 조합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었거나,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탈퇴 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과 상계할 수 있다.

⑤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26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년도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년도 중에 환불하고, 회계년도 말에 정산한다.

제4장 회 계

제27조(회계년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성격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로 정하는 등 회계년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8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비 고)

제1호의 경우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비 고)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의 정기적 게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를 『매월마다』 『분기마다』 등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부수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제31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년도말 결산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2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3조(수익배분 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 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4조(이익금의 처분) ①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발생한 매회계년도의 이익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배당한다.

②제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비 고)

제2항의 배당을 모두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5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5장 임 원

제36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4. 총무 ○인
5. 부장 ○인

(비 고)

1. 조합법인의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임원의 명칭과 그 정수를 정한다.
2. 제5호의 부장을 임원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영업부장, 구매부장, 판매부장, 가공부장 등으로 명기한다.

제37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8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39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준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6.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비 고)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41조(임원의 임무) ①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총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각 부장은 대표이사와 총무를 보좌하며 각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비 고)

제5항의 경우 각부의 업무관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책임) ①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에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비 고)

제4항의 경우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비 고)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감사와 감사 이외의 임원 임기는 다르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서 해임한다.

제4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서류비치의 의무)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의 운영

제47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4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

(비 고)

조합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열거한다.

제5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제명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③제1항의 총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51조(의결권의 대리)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회의내용 공고)총회의 의결사항은 제6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7장 해 산

제54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인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비 고)

조합원의 해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제55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登記하여야 한다.

(비 고)

조합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청산재산의 정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 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8장 보 칙

제58조(준용규정) 제5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9조, 제34조 및 제57조는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14호, 2002. 2.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사업의 선정과 집행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문 보조 용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분야에서 선정된 사업중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해양수산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하며, "그장"을 "시·도지사"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하며, "그장"을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3. "사업부서"라 함은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 및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해양수산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자금부서"라 함은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총무과를 말한다.
5.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를 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①이 규정의 적용 대상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시·도, 시·군 및 기타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용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대상사업은 별표 1에 의하며, 매년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통보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지침 등) ①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시행예정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시행지침에는 사업시행 예정시행년도의 사업시행요령, 사업시행 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평가·환류방식에 관한 사항을 구분·기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여 사업시행 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제3항의 사업시행지침안중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제7조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수산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자격 및 절차, 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2. 자금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중요사항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사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실무위원은 각 실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제7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무처리는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한다.

제2장 사업의 신청·결정

제11조(사업의 공고) 시·도 및 시·군의 총괄부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정하는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와 그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3. 기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제12조(신규사업의 신청)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사업(이하 "신규사업"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어업인 또는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단위까지 계통조직으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투자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투융자 지원의 필요성
2. 기존 유사사업과의 비교분석
3.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4. 어업인등 관계자의 협의결과 또는 공청회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의 저촉 여부
6. 기대효과
7. 기타 필요사항

④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투자분석결과를 평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평가자료에 사업시행지침안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에 신규사업으로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사업으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는 신규사업으로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사업시행지침을 포함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신규사업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규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신청서(융자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포함한다)를 시·도 또는 시·군 및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의 신청은 연중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사업의 사전심사) ①시·도 또는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의 사업부서는 접수한 신청사업의 지원금액이 5천만원(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이상인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수산물 증·양식 부문은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를 포함한다)
2. 기타 부문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③시·도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사업의 지원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자료로서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자별 금액을 기재한 자료

제15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업성 검토) 지방해양수산청장(수산기술관리소장 또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신용조사서에 갈음하여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등의 결정)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및 해양수산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 해양수산조정위원회(이 경우 지역여건으로 해양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시·도 및 시·군에서는 동 위원회에 준하는 다른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군별 우선 순위에 의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2.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융자취급기관장의 신용조사 의견서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사업별 시행지침에 규정한 사업대상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 및 시·군 해양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사업집행주체가 해양수산관련 기관 및 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용자심의위원회(시·도 및 시·군에서의 해양수산조정위원회를 의미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해양수산조정위원회의 공개심의 등) ①시·도 및 시·군의 해양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결과 반영되어야 할 사항
2. 시·도 및 시·군의 자체자금 지원계획
3.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의 자체사업계획
4. 소관사업 부서의 검토의견
5. 기타 심의에 반영해야 할 사항

②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결정하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시행지침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9조(시·군등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취소될 수 있다는 사항을 자체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총괄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시도별·사업별 투융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서식은 시·도의 총괄부서에서 정한다.

제20조(해양수산부의 예산요구서 검토) ①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는 시·도지사또는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별로 시·도, 시·군 및 단체별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요구 일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부합 여부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전년도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결과
4. 당해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

제21조(정부예산안의 통지등) ①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는 다음연도의 정부예산안이 편성되면 즉시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별 예산지원 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매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시·도 예산안을 시·군등으로 조정·배분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지원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포기·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어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앙단위까지 계통조직으로 있는 해양수산기관·단체가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이 다음연도 정부예산에 반영·편성된 경우 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이를 당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정부예산의 배정계획 확정 및 통보) ①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는 다음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에 대한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통보받는 즉시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앙단위까지 계통조직으로 있는 해양수산

기관·단체가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이 다음연도 정부예산에 반영·편성된 경우 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당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정계획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대상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없이 제1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하며, 우선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지구를 확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대상자 및 사업지구 선정 등의 특례) 당해년도 어촌종합 개발권역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선정하여 그 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의 공지) 시·도 및 시·군등은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내용을 홍보지, 반상회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경영장부의 기록등) ①시장 군수등은 정부로부터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과 잘못됨 점을 스스로 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영장부의 서식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이 정하며 수입·지출상황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로 같음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융자금의 집행 및 관리

제27조(보조금·융자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융자사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융자금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융자금의 교부결정) ①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검토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및 자금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 교부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자금집행) ①보조사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서를 통지받은 후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 개산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 개산급신청서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내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부서에 보조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로부터 보조금 지급의뢰를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7일 이내에 보조사업자 희망계좌로 보조금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자금집행) ①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서를 통지받은 후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로부터 자금요청을 접수한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자금 소요내역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송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7일 이내에 시·도의 국고계좌로 송금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 및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자금부서는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국고송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융자금의 자금집행)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교부결정서를 통지받은 융자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융자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금 자금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 소요내역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부서에 융자금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로부터 융자금 지출한도액재배정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확보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농협중앙회 농특회계관리사무국 국고계좌로 융자금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하고 사업부서 및 융자취급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융자사업자에게 융자금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융자취급기관은 지원대상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실적 확인통보 등에 따라 당해 융자금을 사업자의 희망계좌에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금,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협동조합인 경우, 융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경우 또는 사업시행지침 등에 사업실적의 확인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등의 지급지시만으로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보조·융자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보조·융자사업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융자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융자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융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보조·융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융자사업을 종료한 때
2. 보조·융자사업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②제1항의 보조·융자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의 금액확정) ①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법규에 의한 처분 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자 및 자금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의 초과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금부서의 반납고지에 따라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①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보조금의 집행정산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별 정산내역을 검토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반납금 예산확보후 사업별 집행잔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고지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세입고지서 발급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세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당해 시·도지사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세입고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융자금의 정산 및 집행잔액 반환) ①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집행정산에 따라 융자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는 해당사업자에게 융자금의 집행잔액을 융자취급기관에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집행잔액을 반환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이를 농특회계관리사무국에 민납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의 처분제한 및 특별관리

제38조(시설의 처분승인권자) ①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이 지원하여 시설한 해양수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

의 처분승인권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되며,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협회·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직접 보조지원하여 시설한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는 장관(장관이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처분승인권을 갖는 시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집행주체인 시설 및 정부지원 예산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설한 시설로 한다.

③이 장에서 "관리감독자"라 함은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를, "관리자"라 함은 시설의 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재산처분의 제한) ①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당초 목적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 및 시설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적은 사유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 시설의 소재지
4. 시설년도
5. 시설비(보조, 융자, 자담, 기타로 구분)
6. 시설의 규모 및 능력
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
8. 기타 참고사항(첨부서류)

가. 시설을 당초에 목적인 용도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의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

나. 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하여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시설을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

라. 시설을 매각·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또는 양도증서안

마.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바. 시설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의 신청중 용자를 수반하여 시설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수협지회장 또는 여·수산업무를 취급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체의 침몰·파손 등으로 시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의서 없이 승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매각·양도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관리자의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운영하고자 할 때
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
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시·도지사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반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회수 및 해양수산시책에 따른 각종 시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유지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2. 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유희상태로 있거나 앞으로 가동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관리감독자가 말하는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제41조(재산처분 제한의 해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거나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더라도 관리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사업의 사후관리 등

제42조(사업추진실태 보고 및 평가) ①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는 제32조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으로부터 보고된 보조·용자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분석·평가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별 분석·평가서를 해양수산부의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3천만원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집행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및 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년도 예산의 증·감액 또는 사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평가환류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축소·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시설의 관리책임 등) ①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다만, 융자사업은 당해 융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개, 바지락살포 등 어패류종묘입식의 수산증식 사업과 단위사업당 1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 내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관리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 및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자금집행상황·사업추진 진도 및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 1회이상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시설의 관리상황을 조사하여 제3항에 의한 관리부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상황조사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기간만료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관리감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시설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20호 내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는 별표3 해양수산사업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어조합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제2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별도 규정 이
나 다른 지침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관리감독자는 제38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
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산하기관·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해양수산사업보조금집행및관리에관한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1998-12호)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과 지원대상자·지원대상지구로 선정된 사업 그리고 종전의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관리대상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제3조 제2항 관련]

해양수산사업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단위 사업명
1. 어업구조개선	가. 어업구조조정 나. 기르는어업육성 다. 어장환경개선 및 보전 라. 자원조성·관리	○ 국제규제 어선감척 ○ 일반어선감척 ○ 원양어선 감척 ○ 육상양식단지 ○ 해상양식단지 ○ 양식어장개발 ○ 마을어장개발 ○ 내수면어업개발 ○ 양식기반시설 ○ 양식기자재공급 ○ 바다목장조성 ○ 자원조성센터 ○ 어장정화사업 ○ 적조방제사업 ○ 김유기산처리제 ○ 어장환경조사 ○ 어장정화선건조 ○ 굴패각 처리 ○ 인공어초시설 ○ 종묘매입방류, 생산시설 ○ 어업자원 관리 정보화 ○ 어류보호림 등 번식보호 및 조장시설

대분류	중분류	단위 사업명
2. 어촌개발	마. 해외어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선 신어장 개발지원 ○ 해외어장 자원조사 ○ 해외어업기지 건설
	바. 어업질서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지도선 건조·운영 ○ 어선안전조업 ○ 어업협정 수행 어선관리 ○ 총허용어획량제도 ○ 어업통신·전자시설
	사. 수산발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발전기금
	아. 어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자금지원 ○ 해외자원생산자금 ○ 조합경영개선자금 ○ 어망생산운영지원 ○ 부담경감이차보전
	자.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지원 ○ 해외시장개척
	차. 어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 및 설비 지원 ○ 폐선처리장 ○ 선가장 설치 ○ 어선수리소
	하. 어업용보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운반선, 어업용운반선 건조 ○ 급유·급수 시설
	가. 어업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종어항건설 ○ 2종어항건설 ○ 어촌종합개발

대분류	중분류	단위 사업명
3. 수산기술개발	나. 어업인육성 가. 연구기반조성 나. 특정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휴양단지, 어촌관광개발 ○ 어촌민속전시관 ○ 해양수산과학관 ○ 어업인 복지회관 ○ 어업인 후계자 ○ 전업어가 ○ 선도어가 ○ 어업인교육 ○ 귀어가정착자금 ○ 선원공제료보조 ○ 어선공제료보조 ○ 연구시설 보강 ○ 전대차관상환 ○ 수산과학자료관 ○ 시험선 건조 ○ 기술보급시설 ○ 정보센터 운영 ○ 해양환경 정보시스템 운영 ○ 조사선·교습선 건조 ○ 수산기술개발 ○ 특성화대학 지원 ○ 특정과제연구
4. 수산물 유통개선	가.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종합처리시설 ○ 권역별 물류센터 ○ 직거래 판매시설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대분류	중분류	단위 사업명
5. 해양관리	나. 가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건립 ○ 도매시장개보수 ○ 유통자금지원 ○ 활어위판장 ○ 위판장폐수시설 ○ 공동폐수시설 ○ 물류표준화 ○ 유통정보화추진 ○ 원산지관리 ○ 감천유통단지 ○ 감천단지 수질정화 ○ 가공 처리·저장 ○ 산지특산품 가공 ○ 가공시설 현대화 개보수 ○ 김종합처리시설 ○ 진주가공시설 ○ 가공자금 지원 ○ 규격 제·개정 ○ HACCP 도입·정착 ○ 전통식품개발 ○ 가공업체 실태조사 ○ 경영기술지원
	가. 연안해역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해역준설 ○ 환경미화원고용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나. 연안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정비 ○ 미등록토지취득
	다. 해양의식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합수련시설 ○ 해양문화유적발굴

대분류	중분류	단위 사업명
6. 해운 및 항만	가. 연안해운지원 나. 사회간접자본 다. 선원복지 라. 해상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박물관운영 ○ 세계박람회 지원 ○ 장보고 대사 재조명·평가 ○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 ○ 노후선 건조 ○ 낙도보조항로 운영 ○ 배후도로 건설지원 ○ 컨공단 지원 ○ 해양수산연수원 ○ 실직선원 일자리 확보 ○ 선원복지고용센터 ○ 선박검사기술협회 ○ 부두관리법인

[별표 2 : 제44조 관련]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영어조합법인을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요건

가. 법인의 구성원이 어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

나. 사업지원 신청일 기준 1년간의 총출자금 평균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다.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금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협동양식어업 영어조합법인 제외)

바. 설립 후 사업개시일부터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으로 자본금 대비 매출 실적이 높은 법인은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설립전 법인대표를 포함 구성원 1/3이상인 3년이상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사. 1회 3일이상의 교육(복식부기, 세무·회계, 경영전략,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어기술 교육 및 신지식어업인 정보화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아.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영어조합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과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법인이 지원받은 동일업종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업종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자. 출자금은 부동산, 어장, 육상양식·종묘시설, 차량 등 현물일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 및 등록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

2. 사업별 요건

가.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었는지를 확인후 정산 할 것

나. 부도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 영어조합법인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 시설물의 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설물이 어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잉여기간이 없도록 사업시행주체가 적극 관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사업시행주체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해양수산사업 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0000년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총사업비 :
4. 정부지원규모 :
5. 사업기간 :
6. 사업내용 :

사 업 자 ○ ○ ○

80
cm

110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0000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사업비 :
5. 정부지원액 :
6. 사업기간

0000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카형 표지

이 장비(어선, 철부선 등)는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상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1억원이상 지원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판매시설,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사업장 :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해역준설 등

3. 표시방법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푸른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 제4조 제1항 관련]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작성요령

- 별도의 지침지시 없이도 어업인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해양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단위사업의 순서를 대분류별, 중분류별로 적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 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일련 번호	단 위 사 업 명 ()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과(과장 ○○○, 사무관 ○○○)입니다.

1. 목적
2. 시책 및 추진방향
 - * 6-바에서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시책방향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재
3. 근거법령(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의 관련조항을 법령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년	-2004
사업량						
사업비 1』	계	백만원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년도 사업시행요령(○○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지원시설의 종류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반개조식으로 기재

나. ○○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 년거치후 년상환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신규사업의 경우 이 지침 시행후 새로이 신청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6의 가 내지 바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 >항목자체를 삭제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기관명을 기재)

나. 사업담당부서(과단위까지 기재하고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병행기재)

해양수산부 : 과 02-3148-6414

시 · 도 :

시군자치구 :

다. 자금지원예정자(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이어서 기재할 수 없거나 확정전에 발표하여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사업비 집행방법,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기술
- * 대규모 지원시설 또는 첨단시설의 경우 시공자 자격기준, 시설설계, 계약절차, 공사감리, 준공공사 및 대금집행 방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 등의 수량 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에 관한 서식, 사업비에 포함하는 비목의 범위, 검정 및 정산 사무처리 절차, 기타 세부 필요사항을 상세하게 기재
- * 해양수산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하도록 기재

바. 기타사항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운영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체계 기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정하되 가능한한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조치

나. 보고, 기타

- * 보고서식은 사무관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수시보고의 심사를 받은 것에 한하며, 서식 위좌측 여백에 지정 또는 심사를 받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6. ○○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년도는 사업예정 년도의 다음연도를 말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나. 신청자격

- * 선호가 높아 신청경쟁이 치열하여 탈락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자격요건 강화조건을 반드시 기재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마.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의 경우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 별표의 영어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맞도록 명시

우선순위

- * 장관이 따로 정하는 전문경영체에 대하여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반면,
- * 전문 경영체외의 생산자단체 등에게는 어업인 등 보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선정절차

- * 대형사업 및 첨단시설 설치사업 등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표준경영진단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사업성 검토내용 기재

바. 기타사항

-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철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 제13조제1항 관련]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국고계 (%)			보 조 (%)	응 자 (%)		
사업내용별 규모 (량)						
<p>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 제15조 관련]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어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어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어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 제16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 기타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 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 제27조제1항 관련]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 1. 소 속 :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금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자기자금 원정
 라. 지방비부담 원정
-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1.
- 2.
-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제27조제2항 관련]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 제28조제1항 관련]

보조금(융자금) 교부결정서

사 업 명 :

사업자주소 :

성명(명칭) :

1. 보조금(융자금) 교부목적 및 그 내용

-
-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총사업비	기책정액	금회책정액	책정액 누계

3. 보조금(융자금) 교부결정액

연간교부총액	기교부결정액	금회교부결정액	교부결정액 누계

4. 사업자 자기자금액

연간 자기자금액	기책정액	금회책정액	자기자금액 누계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을 결정하였으니 붙임조건을 준수할 것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인)

[별지 제9호 서식 : 제29조제1항 관련]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의 목적 :
3. 보조사업자
가 성명(명칭) :
- 나. 주 소 :
4. 보조사업기간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원정
가. 국고보조금 : 원정
나. 자기부담액 : 원정
다. 기 타 : 원정
6. 보조결정금액 : 원정
7. 개산급신청금액 : 원정
8.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 :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산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명칭) :
주 소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가. 사업계획서
나. 자금집행계획서
다. 전분기 또는 전년도말 현재 보조사업의 계획 대 집행실적(사업의 양과 금액)
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부담금액, 세부사업별 부담
내역, 자금조달시기, 조달방법을 명백히 한 서류
마. 계좌입금의뢰서

[별지 제10호 서식 : 제30조 제2항 관련]

시·도별 자치단체 보조금 국고송금요청서

1. 보조사업분야 :
2. 회 계 명 :
3. 예 산 과 목 :
4. 단위사업명 :
5. 보조사업자 및 국고송금요청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연간교부총액	교부결정액	기송금액	금회송금액	누 계	잔 액
합 계						
부 산						
인 천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작성요령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을 기재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시·도별 지금송금요청액을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 제32조 관련]

보조(융자)사업 추진상황보고(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적(누계)					
	사업 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 비	자담	계	사업 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 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보조금(융자금) 확정서

사 업 명 :

사업자주소 :

성명(명칭) :

1. 보조금(융자금) 교부목적 및 그 내용

○

○

2.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금 원정

3. 보조금(융자금) 확정액 일금 원정

4. 사업자 자기자금액 일금 원정

위와 같이 보조(융자)금액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인)

[별지 제13호 서식 : 제36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16호 서식 : 제43호제3항 관련]

관리번호	No.
	시 도

시 설 명		작 성 자										소 속			
관 리 자 (보 도 사 업 자)		시설물소재지		시 도		구 시 군		동 통 리		리		작성년월일		작성년월일	
												20		19	
시 설 규 모 및 능 력		면 적		연 연 면 적		수 량		비 고		명		제 병		장	
		m ²		m ²		m ³		m ³		m ³		m ³		m ³	
부 지 면 적		구 경		구 경		구 경		구 경		구 경		구 경		구 경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명		칭		칭		칭		칭		칭		칭		칭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시 설 물 내 역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년 도 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1.1 ~ 6.30		7.1 ~ 12.31		1.1 ~ 6.30		7.1 ~ 12.31		1.1 ~ 6.30		7.1 ~ 12.31		1.1 ~ 6.30	
구 분		1.1 ~ 6.30		7.1 ~ 12.31		1.1 ~ 6.30		7.1 ~ 12.31		1.1 ~ 6.30		7.1 ~ 12.31		1.1 ~ 6.30	
시 설 관리 상태 및 관리사항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유 영 실 적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조 직 지 장 명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조 사 년 월 일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일 가 동 일 수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명 수 량 금 액	
41034-30D		415mm × 245mm인쇄용지(특급) 220g/m ²													
1981. 3.17 승인															

시 설 물 평 면 도	사 인
-------------	-----

주 1. 권리번호 : 보급시설과 처리가공시설로 구분 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시설명 : 시설당시의 명칭을 기재

3. 시설규모 및 능력 : 수산물 건조시설 및 가공공장등은

요징어	굴	해조류
T/D	T/D	T/D

으로 표시하고 보급시설은

공 유	경 유	급 수
D/M	D/M	D/M

4. 시설플래너 : 중요기기를 순위대로 기재한다.

명	정	규	격	수	량
암모니아암축기		180mm×180mm×20Y×30PPM(2RT)		1	1개
"	응축기	760D×4.800H(51mmP×96.9CS)		1	1
"	수액기	500P×3,600L		1	1

< 작성 요령 >

1. 관리번호 : 시·군별, 권역별 사업실시년도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2. 작성자 : 관리부 최초 작성자
3. 시설명(사업명) : 기본계획 확정시의 세부사업명(시설명)을 기재하되 용도변경 등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사업명 아래에 ()하여 변경된 사업명을 표기
4. *권역현황 : 관리대상사업(시설)이 포함된 권역의 전체적인 현황 기재
5. 관리자 : 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예 : ○○ 군수, ○○ 어촌계장 홍길동 등)
6. 불량단위 : 선착장, 방파제, 도로등(○ ○ m), 물량장(○ m/om³), 어민회관등 육상건물(○ 동/○ 층/○ ○ m²), 가공시설(○ 동/○ 층/○ ○ om²), 학역시설등(○ 식), 조명시설(○ 동/○ 개소), 급수시설(○ 식), 전기시설(○ 식/kW), 어선등 선박(○ 척/○ ha), 양식어장(○ 식/○ ha), 체험어장(○ 식/○ ha), 기타 난이한 것은 ○ 식으로 표기
7. 사업비등 금액 : 사업비는 보조금 확정(정산)금액을 기재
8. 관리운영실태 : 수입, 지출, 수익은 조사일 기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완공후 운영이 1년미만인 경우는 분석개월수를 표기, 공공시설물인 경우 “주요 운영상황”란에 이용실태, 관리실태 등을 기재(“예” 선착장일 경우 연간 어선 ○ ○ 척 이용, 관리상태 양호등)
9. 수익금 분배율 : 어촌계의 소득사업인 경우 어촌계 적립, 또는 예치후 연말결산후 분배율 기재하고, 지출액중 재투자액은 ()내 기재
10. 고용원 : 상시고용원은 사무직원등 상시근무 인원을 기재하고, 임시고용원은 가공공장 등의 연간 작업인부수를 기재
11. 운영방법 : 어촌계 직영, 어촌계 위탁, 지역민 임대 등으로 구분<임대인 경우에는 승인일자, 승인기간을 ()내에 기재>
12. 주요운영상황 : 시설의 세부운영내역(객실수, 판매품종류 등)과 휴·폐업, 피해상황이 있는 경우 그내용 및 기간을 기재
13. 사후관리(관리실태 점검) : 반기 1회이상 실시한 관리실태 점검결과와 소득시설사업에 대한 경영지도 사항, 수산관리규정 제12조 등에 의거 조치한 행정사항 등을 기재

[별지 제18호 서식 : 제43호제3항 관련]

관리 No.		소 속 작성자 적·성명										
관리자 (보조사업자)	시설물 소재지	시	구	동	리	번지	작성자		작성일자			
							시공자	시공자	작성일자	작성일자		
시설 규모 및 용도												
부지 면적	건물연평수	간물 구조		구조		지역		지구		용도		
	m ²	지상층 / 지하층										
층별	용도별	면적(m ²)	이동(비동)사항									
세(백만원)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기타	자기자금	보수	확장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구분	년도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1 ~ 6.30	7.1 ~ 12.31	1.1 ~ 6.30	7.1 ~ 12.31	1.1 ~ 6.30	7.1 ~ 12.31	1.1 ~ 6.30	7.1 ~ 12.31	1.1 ~ 6.30	7.1 ~ 12.31	7.1 ~ 12.31	
관	시설관리상태 (휴·폐업포함)	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수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지출	"	"	"	"	"	"	"	"	"	"
		손익	"	"	"	"	"	"	"	"	"	"
조사자 성명												
조사년월일												

관공유어선일 경우 「시설규모 및 용도」란을 「동분수, 마력수, 선질, 주요치수(경, 폭, 심) 등록번호」로 개서 사용한다.

50532-04011원
95.12.6 승인

303mm×257mm
(신문용지 54g/㎡)

4. 창립총회의사록 작성(예)

창립총회의사록

년 월 일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번
지 창립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발 기 인 : ○○○. ○○○.○○○.○○○.○○○. (명)

출석발기인 : 정원

발기인 대표 ○○○ 는 위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발기인 전원은 전원 일치의 합의로 발기인 ○○○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다.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전원일치의 합의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임원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에 정하여진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방법을 묻은 바 전원 일치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기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음

대표이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감 사 ○○○
총 무 ○○○
○○부장 ○○○

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락하다.

제3호 의안 제1회 출자납입의 건

의장은 본 영어조합법인 설립당시의 제1회 출자납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별첨 출자자산 내역표와 같이 납입키로 전원일치 합의로 의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동일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와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 3통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하다.

년 월 일

○○영어조합법인
의장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함)

5. 등기신청서 작성(예)

영어조합법인설립등기신청서

1. 명 칭 : ○○영어조합법인(주1)
2. 사 무 소 : ○○도 ○○군 ○○면 ○○리 ○○번지
3. 등기의 목적 :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납입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을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명 칭 : ○○ 영어조합법인

사 무 소 : ○○도 ○○군 ○○면 ○○리 ○○번지

분사무소 : ○○도 ○○군 ○○면 ○○리 ○○번지(주2)

목적과 사업 : 어업경영의 합리화로 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주3)

- ① 공동양식, 어업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②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③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 ④ 어업작업의 대행
- ⑤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출자1좌의 금액 : 금 ○○○○○원

출자액의 납입방법 : 현금이나 어장, 어선, 육상양식·종묘시설, 기타의 현물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에 일시 납입한다 (주4)

출자의 산정방법 : 현물출자액의 산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주5)

조합원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 : 총출자좌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6)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의 총액 : ○○○○좌 금○○○○○원

해산사유(주7)

이사의 성명과 주소(주8)

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영어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주9)

대표이사 ○ ○ ○

감사의 성명과 주소

감사 ○ ○ ○

○○도 ○○군 ○○면 ○○리 ○○번지(주10)

○ 첨부서류

(1) 정관(주11)

(2) 창립총회의사록(주12)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의 인감신고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위와 같이 등기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영어조합법인(주13)

○○도 ○○군 ○○면 ○○리 ○○번지

대표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 귀중

주의사항

- 1) 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동일 시·군내에서 다른 영어조합법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저촉 여부에 유의해야 함
- 2) 설립당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 3) 정관에 규정한 목적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4·5·6) 정관에 규정한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 최고한도를 명확히 기재함
- 7) 정관에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 8) 이사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
- 9)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영어조합법인을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함
- 10) 이상의 등기를 구하는 사항은 등기부에 등기하는 사항과 같은 것으로서 위 기재사항 외에도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기재할 수 있음
- 11·12)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13) 설립등기는 영어조합법인을 대표한 조합원(대표이사)이 신청함

6.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예)

현물출자계약서

1. 출자재산

가. 부동산의 소재·지번 : ○○도 ○○군 ○○면 ○○리 ○○번지

나. 지 목 :

다. 면 적 : m²

라. 평 가 액 : 원

마. 출자금액 : 원(출자좌수 : 좌)

2. 계약당사자는 (이하 출자조합원을 “갑”, 영어조합법인을 “을”이라 칭함) 다음과 같이 약정함

가. 갑은 상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함

나. 을은 갑소유 상기부동산을 양수하고 출자액 ○○○○○○○○원의 출자증서를 교부함

년 월 일

갑(양도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을(양수자) 법 인 명 : ○○영어조합법인

대 표 이 사 : 인

주 소 :

7. 영어조합법인 관련 세금의 종류

가. 국세 (15종)

세 목	과세근거법률	과 세 요 건	납세의무자	영어조합법인 관련분야
소득세	소득세법	개인소득 발생시	개 인	출자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원천징수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소득발생시	법 인	결산소득
상속세	상속세법	개인의 재산상속시	개 인	-
증여세	상속세법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재평가세	재산재평가세법	법인이 보유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 차액 발생시	법 인	보유건축물 재평가시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법	정부가 결정·지정·인·허가하는 물품가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가격 이상 거래시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	개인 또는 법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개인 또는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마진에 대하여 과세	개인 또는 법인	-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특정물품, 특정장소의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개인 또는 법인	-
주세	주세법	주류의 제조·판매업	개인 또는 법인	-
전화세	전화세법	전화사용에 따라 과세	개인 또는 법인	전화사용료에 과세
인지세	인지세법	과세대상문서 작성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수행문서 및 증서 작성시 과세대상 문서에 대하여 과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라 과세	개인 또는 법인	-
개발이익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과세	개인 또는 법인	지목변경 등 개발이익에 대하여 과세
농특세	농어촌특별세법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발생시	개인 또는 법인	종합토지세의 부가징수에 따라 부과
교육세	교육세법	수익금액에 대하여 해당되는 과세표준	개인 또는 법인	-

나. 지방세 (16종)

세 목	과세근거법률	과 세 요 건	납세의무자	영어조합법인 관련분야
취득세	지방세법	토지·건축물 등 과세대상 물 건취득시	개인 또는 법인	업무용 부동산이외의 자동차 등 과세대상 물건 취득시
등록세	지방세법	토지·건축물 기타 권리에 대 한 등기·등록시	개인 또는 법인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법인설립 등기시 면제
경주·마권세	지방세법	승마투표권에 대해 과세	법 인	-
면허세	지방세법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여 권리설정·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 정·검사·검열·심사등의 행정행 위에 대하여 과세	개인 또는 법인	면허취득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민세	지방세법	가. 균등할 주민세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 또는 법인	영어조합법인이 운영 하는 사업장 또는 사 무소마다 과세
	지방세법	나. 소득할 주민세 - 개인소득 또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세	개인 또는 법인	○개인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 에 대하여 과세 ○법인 : 법인소득에 대해 부가적으로 과세(면제소득제외)
재산세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대장에 건축물·중 기등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 는 자	개인 또는 법인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업무용·사치성이 아닌 부동산은 면제)
자동차세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차량·중기 보유시	개인 또는 법인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중 기보유시 과세
주행세	지방세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세의 납부의무자	개인 또는 법인	-

세 목	과세근거법률	과 세 요 건	납세의무자	영어조합법인 관련분야
농지세	지방세법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 거나 농작물을 재배케함으 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자	개인 또는 법인	-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과세기준일 (6.1)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	개인 또는 법인	과세기준일 현재 고 유업무용으로 직접 사용시 면제
도축세	지방세법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	개인 또는 법인	-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자	개인 또는 법인	-
사업소세	지방세법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 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진자	개인 또는 법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 에 대해 전액 면제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또 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 가 있는 자	개인 또는 법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 세 과세시
공동시설세	지방세법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 리 시설, 기타 공동시설로 인 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 해 과세	개인 또는 법인	사무소 건축물에 대 해 소방공동 시설세 를 전액 과세함
지역개발세	지방세법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에 대하여 과세	개인 또는 법인	-

8. 영어조합법인 관련 세금 감면내용

내 용	관 련 조 문
<p><국세></p> <p>가. 법인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조합원당 연간 1천2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p>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용 경영 및 어업작업의 대행 용역 ○ 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구, 어망, 사료 등) <p>다. 인지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가공·판매·보관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p>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4조제1항</p> <p>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3항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특례규정 제3조제7항</p> <p>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0호</p>
<p><지방세></p> <p>가. 취득세 경감(5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p>나. 등록세 경감(5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어조합법인 설립 등기시의 등록세 전액 면제 <p>다. 재산세 경감(5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5.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p>라. 종합토지세 경감(50/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5.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p>지방세법 제266조제7항</p>

내 용	관 련 조 문
<p><출자조합원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토지 등(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 배당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과세기간별 1천20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 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5/100로 하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동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봄 	<p>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제4항</p> <p>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4제2항</p> <p>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p>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제7항 내지 제9항)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등의 지방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9. 영어조합법인에 전액 과세내용

내 용	관 련 조 문
<p><국세></p> <p>가. 법인세 농지소득외 소득중 조합원당 1천200백만원 초과소득</p> <p>나. 특별부가세 영어조합법인이 소유하는 토지·건물·주식 양도시</p> <p>다. 인지세 조감법상 면제 및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를 제외한 각종 과세문서</p> <p>라. 전화세 전화가입자</p> <p>마. 부당이득세 국세청 기준가격(고시가격) 초과판매액</p> <p>바. 토지초과이득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희토지</p> <p>사. 자산재평가세 건축물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 차액에 대하여 전액과세</p> <p>아. 증권거래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과세</p> <p>자. 교육세 관련세금 납부시 과세</p> <p>차. 개발이익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과세 (택지개발·공업단지·관광단지·유통단지·지목변경 등)</p>	<p>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p> <p>법인세법 제2조</p> <p>인지세법 제1조</p> <p>전화세법 제1조</p> <p>부당이득세법 제1조</p> <p>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p> <p>자산재평가세법 제9조</p> <p>증권거래세법 제1조</p> <p>교육세법 제3조</p> <p>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p>

내 용	관 련 조 문
<p><지방세></p> <p>가. 취득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소유 부동산 ○ 부동산외의 모든재산 <p>나. 등록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업무외의 부동산 등기 ○ 부동산외의 모든 재산,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p>다. 재산세, 종합토지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토지 <p>라.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토지, 건축물에 대한 전액과세 <p>마. 사업소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에 과세 <p>바. 자동차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차량에 대해 전액 과세 <p>사.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면허세, 마권세, 지역개발세 등 	<p>지방세법 제266조제7항</p> <p>지방세법 제266조제7항</p> <p>지방세법 제266조제7항</p> <p>지방세법 제235조의2 지방세법 제239조</p> <p>지방세법 제244조</p> <p>지방세법 제196조의3</p>

10. 영어조합법인 설립시 세무신고사항

세 법	조 합	항 목	내 용
법인세법	법 제109조	법인설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와 다음의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 정관(현물출자 있는 경우 그 출자물건의 명세) - 출자자의 주소, 성명과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 간주
	시행령 제25조제3항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신고(정액법 또는 정률법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회계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제출
	시행령 제74조제3항	재산자산평가방법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제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11조 제5조	사업자등록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등기부등본(법인설립전 발기법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허가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옥대장

세 법	조 합	항 목	내 용
지방세법	제120조	취득세 과세물건취득 신고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제118조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신고	○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제234조의2	토지소유권 취득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 일(6.1)로부터 10일 이내 당해 토지 관할 시·군에 신고
	제251조	사업용 건축물 신고	○ 건축 증·개축, 멸실, 건축물양수, 소유자 주소, 성명, 명칭변경, 사업소 이전, 휴·폐업시 당해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에 신고 ○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직권조사
	제192조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 변동사항 발생시 30일 이내 시·군청에 신고
	제196조의2	자동차 취득·폐지 신고	○ 자동차 취득·폐지시 변경·이전 등 특일로부터 7일 이내 시·군에 신고

11. 영어조합법인 관련 일반법령(발췌)

민 법

※ 제13절 조합(수산업법 제9조의3제1항 관련)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금전출자운영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운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 책임) 조합원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계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 망
2. 파 산
3. 금치산
4. 제 명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요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 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 제11절 위임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 수입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수입인의 보고의무) 수입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수입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 수입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액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입인이 위임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수입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입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수입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입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입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입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입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입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입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입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①수입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자에 대하여 지출한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입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입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 법

※ 조합법인 해산시 준용규정 (수산업법 제9조의3제2항 관련)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한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 조합법인 등기시 준용규정 (수산업법 제9조의3제3항 관련)

제19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결재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실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결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7조(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년월일, 변경전의 회사의 상호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경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198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3.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199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 등) ①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200조(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2조 내지 제196조의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1조(합명회사로의 계속 또는 조직변경의 등기) ①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서

회사를 계속하거나 합병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합병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2조(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
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2. 영어조합법인 관련 조세법령(발췌)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년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중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 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호 ~ 제4호 :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

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능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호 ~ 제2호 : 생략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호 ~ 제10호 :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호 ~ 제8호 : 생략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호 : 생략

제106조의2(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호 ~ 제9호 : 생략

10.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양축가·어민(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와 농·축·수·임산물의 계약재배·출하·판매·보관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1호 ~ 제20호 :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